

외국인 노동자 산재 보상

‘불법’ 수렁에서 건져낸 인권

서울 고법, 필리핀인 아키노씨 등에 첫 승소 판결

인권의 사각지대로 방치된 채 당국의 처분만을 기다려온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단비가 내렸다. 최근 불법취업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로써 그동안 불법취업자임을 빌미로 삼은 악덕 기업주들의 저임금과 임금체불, 그리고 폭행·감금·협박 등에 의한 강제노동에 이르기까지 온갖 부당노동행위를 감내해야만 했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권리 구제의 길이 열린 셈이다.

11월26일 서울고법 특수9부(부장판사 이진웅)는 필리핀 노동자 아키노 시바은씨(26) 등 2명이 서울 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가 불법취업자라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반려한 조처를 취소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자는 근로자로 본다는 근로기준법 제14조와 외국인 근로자에게 그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규정에 비추어 아키노씨가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근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산재보상법상의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미국측 제안에 따라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종결짓기로 한 최종일인 12월15일까지는 2주일이란 여유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12월1일 브뤼셀 회담은 최종 타결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담판을 짓는 회담이라 할 수 있다.

프랑스는, 유럽이라는 대변인을 통해 미국과 상대해왔다고는 하나, 이번 무역협상 분쟁을 미국과 자국 간의 신쟁전이나 마찬가지로 여기고 있어, 워싱턴에서 브뤼셀로 이어지는 쌍무회담을 일단 하나의 외교적 승리라고 본다. 농업부문 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고 버텨온 미국측이 다시 토의의 장으로 돌아왔음은 사실상 재협상할 용의를 확인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때문이다. 시종일관 독불장군처럼 강경 자세를 고수해 온 프랑스 정부의 고집이 어느 정도 먹혀든 셈이다.

사업주들에게도 장기적으로 이득 될 듯

이는 출입국관리법을 근거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해 노동 관계법 적용을 배제해온 노동부의 방침을 부인하는 것이다. 이로써 아키노씨를 비롯한 6만명에 이르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산재로 인한 휴업급여와 장애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트인 셈이다. 노동부는 지난 91년에만 해도 늘어나는 외국인 불법취업자들에 노동관계법 적용의 불가피성을 인정해 산재 보상이나 체불임금 청산 등의 범위 안에서 이를 구제하는 지침을 시행, 사업장을 근로감독해왔다. 그러다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회

문제화하고 법무부와 경찰 등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범법자임을 들어 불법취업자와 이들을 채용한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자 노동부는 92년 8월부터 이같은 지침을 철회했다. 그러나 이번에 법원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불법체류자에 대한 처벌과 그 근로 관계의 유효성과는 별개”라고 판시했다.

이번에 소송을 낸 아키노씨는 92년 10월 불펜 케이스를 제작하는 한 공업사(서울 성동구 상왕십리)에서 플라스틱 사출공으로 일하다 사출기에 왼손 손가락 3개를 잘려 노동부에 요양신청을 냈으나 불법취업자라는 이유로 반려되자 지난 6월 소송을



산재로 죽은 파키스탄 노동자: 비로소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를 구제할 길이 트였다.

냈었다. 현재 필리핀으로 귀국한 아키노씨를 대신해 소송 진행을 맡아온 박무영씨(구리노동상담소)는 “외국인 노동자가 대부분 산재가 빈발하는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를 계기로 작업환경 개선과 내외국인 노동자의 동등한 처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5조는 국적에 따른 근로기준의 차별 대우를 금지하고 있고 국제노동기구(ILO) 제143호 조약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균등대우와 권리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와 사정이 비슷한 이웃 일본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산재 위험에 떠는 외국인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대형 사고가 나면 노동자들과 함께 망했던 사업주들에게도 장기적으로 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당 기자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필리핀 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소의 전오식이

경영하는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 16의 16 소재 에이 아트 공업사에서 프라스틱 사

출공으로 종사하여 오던 중 1992.10.2. 02:00경 위 공업사 성형사출부 작업실에서

성형사출기에 프라스틱 원료를 투입하다가 왼손이 달려 들어가는 바람에 좌 제2

내지 5 수지 좌멸창 골절(분쇄 개방성)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해 10.26. 피고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고용체류자격이 없는 외국

인 근로자인 원고가 불법취업중 발생한 재해로서 이는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보

상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같은 해 10.31.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

(이하 이 사건 불승인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불법체류중인 외국인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고, 근로기준법상 외국인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규정이

(사용)

인권 자료실		
등록일	분류기호	자료번호
1993. 11. 26.	A-3-6	18
1993. 11. 26.	판결선고	인
1993. 11. 26.	원본영수	

서울고등법원

제 9 특별부

판 결

사 건 93구1677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아 키 노 엘. 시 바 온(Aqino L. Sibaen)

미드사얌 코타-바로 필리핀(Midsayap

Cota-Bato Philippines)

주거 :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 16의 16 에이

아트 공업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 광 운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송 윤 배, 장 주 영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

소송수행자 이세현, 배운정, 이수영, 박찬호

1993. 11. 12.

주 문 피고가 1991.10.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5

없으며, 인도주의적 견지에서라도 산업재해보상법의 적용을 받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고용채류자격없이 국내사업장에 불법취업한 외국인으로서 그 사업주와 체결된 고용계약은 구출입국관리법(1992.12.8. 법률 제452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2항에 위반되는 불법고용계약이므로 원고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그러므로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4조, 근로기준법 제78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다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 보험급여를 받을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같은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하면, 같은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

는 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다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할 것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외국인 근로자에게 그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 헌법 제6조, 국적에 따른 근로조건 차별대우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5조의 각 규정의 입법취지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산업재해에 관하여 국가가 보험자로서 재해보상책임을 져야 할 각 사업주, 사용자들을 보험가입자로 하고 재해보상청구권자인 피해자를 수급권자로 하여 산업재해발생시 사업주 등이 낸 보험료로 피해근로자에게 신속, 공정하게 재해보상을 실시하는 보험제도의 일종으로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제4조), 이로써 근로자 보호에 충실을 기함과 동시에 사업주 등이 부담할 배상의 위험을 분산, 경감시키려는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피해자가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구출입국관리법 제15조는 외국인의 체류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1항에서 "외국인은 허가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안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그 제2항에서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6호, 제82조 제5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외국인은 강제퇴거됨과 동시에 형사처벌을 받으며, 같은 법 제84조 제1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내국인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각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사람의 출입국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같은 법 제1조), 위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2항의 각 규정은 모두 국가가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단속할 목적으로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단속법규에 불과하므로 위 각 규정에 위반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는 위에서 본 소정의 법칙이 적용될 뿐 행위자체의 법률상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관련법규에 관한 해석을 종합하여 보면, 고용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과 국내사업장의 사업주가 구출입국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2항의 각 규정에 위반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외국인이 같은 법 제45조 제6호, 제82조 제5호에 의하여 강제퇴거됨과 동시에 형사처벌을 받고, 그 사업주가 같은 법 제84조 제1호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근로계약은 유효하므로 그 외국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그가 산업재해보상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다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

(2) 그런데 갑 제1 내지 5호종의 각 기재에 현존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  
고는 필리핀 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고용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하고  
1992.3.28. 위 전오식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그 시경부터 동인이 경영하는 위  
에이 아트 공업사에서 프라스틱 사출공으로 종사하여 오던 중 같은 해 10.2.  
02:00경 위 공업사 성형사출부 작업실에서 성형사출기에 프라스틱 원토를 투입하  
다가 왼손이 팔려 들어가는 바람에 좌 제2 내지 5 수지 좌팔창 골절(분쇄 개방성)  
상 등의 부상을 입은 사실, 한편 위 에이 아트 공업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  
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3) 위 인정사실을 위에서 본 관련법규정에 관한 해석에 비추어 보면, 외국  
인으로서 고용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원고와 국내사업장의 사업주인 위 전오식  
이 고용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구출입국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2항의 각 규정에 위  
반하였다 하더라도, 그 고용계약은 유효하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  
업장인 위 공업사에 근로를 제공하다가 업무상 부상을 입은 이상 산업재해보상보  
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불승인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  
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11. 26.

재판장 판사

이건용

판사

서기석

손수일

58

인권 자료실		
등록일	분류기호	자료명
WS	A 3-6	13

보도 자료

이번 행정소송에 대한 문의는  
 박 무영 구리노동상담소 0346-67-3010  
 0346-551-4886 ■■■ 012-235-3608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산업재해 불인정에 대한 첫 행정소송

92년 3월 28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왕십리 16-16소재 (에이 아트공업사)에 입사풀라  
 스틱 볼펜 케이스제작 회사 (아기리 시바우) 근로자

체류상황

- 1> 92년 1월 관광 여권으로 한국입국
- 2> 92년 6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불법체류자 신고기간내 자진신고를 받아
- 3> 1차 92년 12월까지 체류연장
- 4> 2차 93년 6월 30일까지 체류연장
- 5> 3차 93년 12월 30일까지 체류연장됨

사고경위:

92년 10월 2일 새벽 2시경에 작업도중 성형사출기 기계에 왼쪽 손가락 4개 분쇄개방성  
 부상당하여 접합수술을 하여으나 손가락 3개 전단수술함

최초 요양신청

- 1> 92년 10월 26일 노동부 서울 동부 지방사무소에 요양신청서 접수
- 2> 10월 30 요양신청서 서류발려 (산재불인정)
- 3> 불법체류자 취업중 이러한 사고란

산재 불인정에 대한 심사청구

- 1> 92년 11월 10일 심사청구
- 2> 92년 12월 30일 (기각)
- 3> 기각이유 출입국 관리법 위반 (출입국 관리법 15조 2항 누구든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될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 하여서는 아니된다  
 는 조항을 지키지않은 불법 취업자 이므로 산재 불인정

산재 불인정에 대한 재심사 청구

- 1> 93년 3월 3일 재심사 청구
- 2> 93년 5월 3일 (기각)
- 3> 출입국 관리법 15조 2항 위반을 했기 때문에 정당한 근로계약을 했다고 볼수없다

산재 불인정에 대한 행정소송

1> 법적 대리인 손광운 변호사를 위임하여 93년 6월 26일 서울 서초동소재 고등법원에  
 행정소송 제기함 (법적대리인 손광운 변호사 전화 0351-874-1652-3 의정부시 가능동 )

노동부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산재처리 지시

1> 91년 10월 18일 노동부는 전국 44개 지방사무소에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서  
 도 산재보상을 지시했다 노동부가 산재보상의 근거로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했다 하드  
 라도 근로기준법 5조(균등처우)에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대우를  
 할수없다는 이유로 산재보상 지시를 내린바있다

2> 91년 10월 18일 부터 92년 8월 12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산재보상의 해  
 태를 받은 노동자는 사망자 2명 등 37명

노동부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산재불인정

- 1> 92년 8월 12일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산재불인정 처리지시
- 2> 출입국 관리법 15조 2항 위반사항 근거로 (출입국 관리법 15조 2항 누구든지 대통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될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 하여  
 서는 아니된다)

행정소송의 취지

-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도 노동법상 당연히 내국인노동자와 동등하게 산재보상을 받  
 을 권리가있다. 궁색하게 노동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출입국관리법 15조 2항을  
 위반 하므로 산재처리를 할수 없다고 주장 하고있다. 현행 노동법상 인금을 목적으로  
 근로하는 자가 노동자란 근기법 14조에 명시 되었고, 근기법 5조에는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인 신문을 이유로 차별할수 없다는 조항이 있으며 근기법 78조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치료 및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조항을 노동부가 위반하고 있다

- 출입국 관리법은 동법이며 노동법은 사법으로 노동문제는 노동법에 의해 처리되어야  
 법의 형편에 맞으며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산재불인정의 대한 지침은 노동법을 근거로  
 내려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출입국관리법을 근거로 산재불인정 지침은 노동부가 스스  
 로 어기고 있다

- 이미 들어온 외국인노동자는 내국인노동자와 동등하게 (균등처우)를 해야하며 저임  
 금을 목적으로 기술연수란 변칙적인 방법으로 외국인노동자 수입은 내, 외국인 노동자  
 에게 불행할 뿐이며 결국 세로운 문제만 발생된다

세로운 문제발생 3디업종의 문제

- 산업재해 대량발생 우리나라 전체 산업재해의 39%가 50인미만 사업장에서 발생되고  
 있다. (92년 산재발생) 또한 비숙련자가의 경우가 전체 산업재해의 3/1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숙달되지 않은 외국인노동자가 대량으로 유입될시 산업재해 증가는 필현적인 현  
 실이다.

- 저임금에 맞들인 나머지 3디 업종의 작업환경 및 근로조건 개선의 지연되며 결국 산  
 업재해 예방에 소홀하게 대처할 가능성이 높아져 3디업종의 노동력 부족은 더욱더 심  
 화 될것이다.

- 소위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3디 업종이 노동력이 다른 업종에 비해 노동력이 부족한  
 이유는 소득이 높아져 기피한다고 업계와 관계당국이 주장하나 실제 3디업종의 뒤를  
 돌아보면 산업재해가 빈발하고 의외로 저임금이며 미래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 한것이  
 공통적인 부분이 많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지 않고 일방적인 3디업종을 노동자가 기  
 피 한다고 주장은 문제가있다.

- 국내 노동시장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에 아직까지 240만 (경제 기회원 91년) 있  
 으나 그러나 ( 91년 법무부 훈령 255호) 노동인 노동자 기술연수 지침에 따라 50인 미  
 만 사업장도 외국인노동력을 유입이 가능해 본격적으로 유입이 될경우 40만여명이 유  
 입되므로 그만큼 노동시장이 왜곡될 소지가 높다.

80.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신고현황 및 처리결과  
(신고자, 사업장명, 신고사유, 처리결과)

구리노동상담소 자료 호  
전화 (0346) 67-3010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신고 및 처리현황 ('92.9.30현재)

년월	사업장명	신고자 (재해자)	신고사유	처리결과
1	우진부건(주)	신기환	우측부 외과골절 등 치료	요양, 휴업
2	동원산업(주)	박 일	우측 견비골 골절의 치료	휴업
3	(주)한양	정상철	우측측두골 부개골골절 등 치료	요양, 휴업
4	(주)세원건설	윤해도	두개골 골절 등 치료	휴업, 장해
5	동성산업사	바스넷	수지 협착의 치료	요양, 휴업, 장해
6	진흥기업	이영하	견골간부의 개방성분쇄골절 등 치료	휴업
7	한미산업	김복록	제2,3 수지 부상의 치료	휴업, 장해
8	동원산업건설(주)	설상업	우수중지 절단의 치료	요양, 휴업, 장해
9	경원건설(주)	김정수	사망에 따른 보상신청	유족, 장의비
10	우로건설(주)	신수룡	턱밑골반통 부상 치료	요양, 휴업, 장해
11	한송산업	보가디	우수중지 원위지골 절단의 치료	
12	고려기업	SURY	우측발목관절부 외상성 절단상치료	휴업, 장해
13	유성기업사	ROLANDY ASPREC	좌수협착 부상의 치료	휴업
14	(주)한양	장종학	취업중 부상의 치료	휴업
15	피남전기	ABDUL RAZZAK	취업중 부상의 치료	요양, 휴업
16	영미산업	RUNALDO E. MADRID	좌상완부 절단 등에 대한 치료	요양
17	향대기업	MD. ISLAM	취업중 부상의 치료	휴업, 장해
18	신실업	NANDA BAHADUR GURUNG	취업중 부상의 치료	요양, 휴업
19	대양철산	린 디	우수부 압박상 치료	
20	서원건설	나로스	취업중 부상의 치료	요양, 휴업, 장해

년월	사업장명	신고자 (재해자)	신고사유	처리결과
21	산진영금속	아마스	취업중 부상의 치료	휴업, 장해
22	진영철속 산업(주)	데비마하 를 할키	우측발목 분쇄골절 등 치료	요양, 휴업
23	(주)건영	김준영	우측관 골절상 부상의 치료	
24	삼성종합건설	윤영복	손가락 부상의 치료	
25	(주)한양	임진영	좌발목 근위부 개방성 분쇄상 및 분쇄상 골절 등 치료	휴업
26	보원산업사	두부가 바하드타바	취업중 부상의 치료	휴업, 장해
27	(주)한양	안성동	취업중 부상의 치료	휴업
28	(주)세아정공	김학길	취업중 부상의 치료	요양
29	동원산업 (주)	이희승	경추 척추신경손상 등 치료	요양, 휴업
30	백광산업공업사	에드가르 도	제5-6경추부 절절 및 탈구상의 치료	요양
31	(주)한양	MR. JANROON	취업중 부상의 치료	요양
32	(주)한양	MR. PRAGE ET LOKVIT	취업중 부상의 치료	요양
33	(주)한양	김경자	방수 작업중 부상의 치료	휴업, 휴업, 장해
34	(주)건영	이 추	우대외부 개방골절 치료	휴업
35	현대건설	최영환	다리골절 치료	요양, 휴업
36	영미산업	사 하	좌수 제2지 협착의 치료	요양
37	불사기업	이명길	사망에 따른 보상 신청	유족, 장의비

\* 참고사항 : 처리결과의 "요양, 휴업, 장해, 유족, 장의비"는 '92.9.30현재 신고인  
(재해자)에게 산재보험으로 지급된 보험금어의 상부를 말한다.

구리노동상담소 자료  
전화 (0346) 67-301

(별지 제9호시식)

보험가입사		산입제해보상보험		처리기간	
(1) 기호		(초진) (제진) 요양신청서		10일	
(2) 번호	제 호				
신청인 (근로자)	(3) 성명	ARUINO SIBAEN	(4) 주민등록번호		
	(5) 주소	MIDAYAR COTABATO PHILIPPINES	(6) 직종	(상·8, 인·8)	
	(7) 채용일자	92. 3. 28	(8) 하려	(9) 부상또는발병일시	92. 10. 2
⑩ 제해원인 및 발생상황(진원, 제요양을 받고자 할때는 그 사유를 기재한 것)					
일시(연계)	92. 10. 2일 0.2사경에				
장소(어디서)	철공장 상행사출부 작업실에서				
행위자(누가)	피해자 시바에이가				
행위내용(무엇을)	제품생산 상행사출 작업단중				
경위(어떻게)	제품 투입 과정에서				
이유(왜)	본인의 부주의나 판단 미숙으로 상행사출 기계에 손이 들어감				
복지지	(11) 성명	조한기	(12) 주민등록번호	640122-1006517	(13) 직종
					상행사출부
위에 기재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19 사업의 명칭 에이.아트 소재지 서울 서동구 상행사출 16-16 보험가입자(사업주)의 성명 조한기					
(14) 심명부위 및 심명명	뒷면 소견서 참조				
산입제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19 신청인 시바에이 노동부 서울 동부 지방사무소장 귀하					
구비서류: 산입제해조사표(별지 제9호의 2시식) 1부				수수료 없음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하여 드립니다.					

4407-21 B  
1981. 8. 18 승인

190 mm x 268 mm(신문용지 54g/ml)

(초진) (제진) 소진시		
(15) 성명	시바에이	
(16) 주민등록번호		
(17) 심명부위 및 심명명	1. 좌멸창 골절 제2,3,4,5수지 좌(본쇄 개방성) 2. 절단 제4수지 기존증 좌 3. 전신관찰 및 간질환	
(18) 부상발병일시	19 92. 10. 2 . 14시 분경	
(19) 초진일시	19 92. 10 . 2 . 16시 분경	
(20) 기존질병 및 장애유무	유 무	
(21) 기존질병 및 장애상태		
(22) 치료에 상 기간	19 92 . 10 . 2 . 부터 ( 70 ) 일간 19 92 . 12 . 10 . 까지	
(23) 입원	1992. 10. 2 . 부터 28 일간 1992. 10. 29 . 까지	
(24) 통원	1992. 10. 30 . 부터 42 일간 1992. 12. 10 . 까지	
(25) 제가요양	19 . . . 부터 일간 19 . . . 까지	
⑭ 담당의사의 진료소견(별지 사용 가능)		
(초진, 제진)시 상태	상기진단하에 가료중이며 향후 절단부 단단성형술을 요하며	
치료또는치방내용	향후 약10주간의 가료가 요할것으로 상료됨.	
향후장애유무		
입원이된요한이유		
기타참고사항 (진원의 필요성이부등)		
위에 기재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19 92 동대문구 신월동 98-78 의료기관의 명칭 서울 서동구 상행사출 16-16 소재지 서울 서동구 상행사출 16-16 담당의사의 면허번호 제 16000호 성명 김갑택		
※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노동부 지방사무소(보상과)
신청서작성	송부	지수 (서무과)
		회인 [사실회인]
		결제 [소장]
	통지	진정서작성
		6410-226
		7210-546
		7110-546

#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

강남구 청담동 47-4 / ☎ 546-5271~2 FAX 540-1079

0-4321

10.

31.

대표

신청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	
	번호			
처리과			공람	
담당자				

신청서 반려

0. 2. 발생한 재해로 요양중인 귀사 소속근로자 "아퀴노 시바은"의 최  
 제 접수되어 그내용을 검토하였던 바,  
 은 필리핀인으로서 귀사에서 불법취업중 발생한 재해로 이는 산재보험  
 되지 않아 본신청서를 반려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1부. 끝.

[별지제 1호서식]

구리노동상담소 자료 호  
 전화 (0346) 67-3010

## 심사청구서

처리기간

30 일

청구인	①주소	의정부시 가능1동 362-16	②근로자와의 관계	
원처분	②주민등록번호	611206-1238811	④성명	손 광 은
받은자	③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K064203	⑤	1961.12.6. 생
근로자	⑥주소	MIDSAYAQ, COTABATO PHILIPPINES	⑧성명	AQUINO L.SIBANE (25세) 생
	⑦주민등록번호	상 동	⑩성명	
	⑧주민등록번호	상 동	⑪성명	
	⑨사업장의소재지	성동구 상왕십리동 10번지 16호	⑫사업장의 명칭	에이아트공업사
⑬원처분지방노동관서	⑭청(소)장의 성명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	⑮원처분을 안	19 . . . .
⑯원처분 년 월 일	19 . . . .			

청구의 취지 및 이유 (별첨)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 및 심사에 관한 법률 제 3조제 1 항 및 동법시행령 제 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1992 년 11 월 10 일

청 구 인  
 변 호 사 손 광 은

산 재 심 사 관 귀하

첨부서류

- ①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② 증거조사신청서 (증거조사를 신청할 때에 한함)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하여 드립니다.

수입인지

없 음

동부

제



인에 대하여 한 1992. 10. 31.자 최초 요양신청서

리.

「청구 이유」

1. 요양 신청

신청인은 청구외 에이아트 공업사에 92. 3. 28.경부터 일해오던중 92. 10. 2. 02:00경에 위 공장 성형사출부 작업실에서 성형사출기에 왼손이 팔려들어가 전치 70일 이상의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92. 10. 26. 노동부 서울동부지방사무소에 산업재해 보상법에 따라 요양신청을 했으나 청구취지 기재처럼 92. 10. 31.자로 불법취업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신청서가 반려되었습니다.

2. 취소 청구

신청인 불법체류한 외국인이라는 점만 제외하고 엄연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임이 분명합니다.

근로기준법 어디에서도 신청인의 경우에 근로자로 볼수 없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인도주의적인 견지에서도 당연히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이웃 일본의 경우 불법체류 유무를 따지지 않고 산재의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92. 9. 30. 현재 외국인이 신청인과 같은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산재혜택을 받은바 있습니다.

동부

을

변호사 손 광 운 법률사무소

정부시 가능1동362-16 법무빌딩2층(법원입구)

전화 : 874 - 1652 ~ 3

변호사 손 광 운 법률사무소

의정부시 가능1동362-16 법무빌딩2층(법원입구)

전화 : 874 - 1652 ~ 3

동부

을

면에서도 위 반려처분은 부당합니다.

가지 이유에 비추어 신청인의 요양신청을 반려한 피청  
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손 광 운 법률사무소  
가능1동362-16 법무빌딩2층(법원입구)  
화 : 874-1652~3

동부

을

구리노동상담소 자료 호  
지화 (0346) 67-3010

1992 심사결정 제 2911 호

# 등분 결정서

사 건 명		요 양	
심 사	성 명	손 광 운	
	주 소	의정부시 가능1동 362-16	
원 처 분 청		서울동부 지방노동(청 . 사무소)장	
원처분을 받는 자	성 명		피재근로자와의 관계
	주 소		대 리 인
대 리 인	성 명		
	주 소		
피 재 근 로 자	성 명	아키노 시바은	
	주 소	MIDSAYAQ, COTABATO PHILPPINES	
	소 속	에이아트공업사	

주 문:

본건 심사청구를 "기각" 한다.

### 1. 청구취지

청구인 손광운(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피재자 아키노시바은(이하  
필리핀국적 불법취업근로자(이하 피재자라 한다)의 청구대리인으로서 서울동부  
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이 92.10.31자 피재자에 대하여  
행한 산재요양을 청구하는 요양청구서에 대한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구한다.

아트공업사에서 92. 3. 28경부터 일해오던중 92. 10. 2 성형  
팔려들어가 재해를 입고 원처분청에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재자가 불법취업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요양신청서가  
자가 불법 체류한 외국인이라는 점만 제외하고 엄연히  
을 받은 근로자임이 분명하며 근로기준법 어디에서도  
자로 볼수 없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당연히 산재보험의  
로 원처분청의 요양신청서 반려처분은 부당하다

시바은은 필리핀인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92. 3. 28  
십리동 16-16소재 에이아트공업사에 프라스틱 사출공으로  
년중 92. 10. 2. 02:00경 위 고정 성형사출부에서 작업중  
팔려들어가 등 재해가 발생하였던 것으로서 상병명  
3, 4, 5수지 좌(분쇄 개방성) 2)절단 제4수지 기존증좌  
"으로 동서울병원에서 현재까지 요양중인 것으로 이에  
자 92. 10. 26 최초요양신청서를 작성 당소에 제출하기에  
불법취업중인 외국인 근로자로 이는 재보 32546-879  
류자격없는 외국인 취업자에 대한 산재보험업무처리  
상이 되지 않아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대상이 되지  
하면서 피재근로자의 요양신청서를 반려한 당소의 처분  
료된다

- 나. 청구취지 및 이유서
- 다. 원처분청 답변
- 라. 최초 요양신청서 사본
- 마. 최초 요양신청서 반려

#### 5. 판 단

이건 신청에 있어 청구인은 피재자가 고용체류 자격없는 외국인 취업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므로 산재보험법에 의한 요양  
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원처분청이 불법 취업중인 근로자라는 이유로 피재자  
의 요양신청서를 반려한 처분은 부당하다하여 심사를 청구한 것이다

따라서 이건의 쟁점은 고용체류 자격없는 외국인 취업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고 보고 관계심사자료  
에 의거 살피건데 1)피재자는 필리핀인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92. 3. 28  
에이아트공업사 사출공으로 근무하던중 92. 10. 2 성형 사출부에서 작업중  
성형사출기에 왼손이 팔려들어가 상병명 "1)좌멸창 골절 제2, 3, 4, 5수지좌  
(분쇄개방성) 2)절단 제4수지 기존증 좌 3)전신관찰 및 간질환"등으로 동서  
을병원에서 요양중 최초 요양신청서를 원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원처분청으  
로 부터 요양신청서 반려처분을 받은바 고용체류 자격없이 국내사업장에서  
취업중인 외국국적 소지자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데 출입국관리법 제15조 제2항은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될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  
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법한 고용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계약은 법률상 인정될수 없는 불법 고용계약이  
고 한편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성립한 근로계약이 법률상

있는 산재보험법도 불법취업 외국인에게는 적용될수 없다 하겠다

그러므로 원처분청이 피재자가 신청한 요양신청서를 반려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년 12 월 30 일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관

성 명 홍 무 영 (인)

\*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경유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우 427-76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 제2종합청사 / 전화 (02) 503-9765

문서번호 심사 32570- 3240

시행일자 1992. 12.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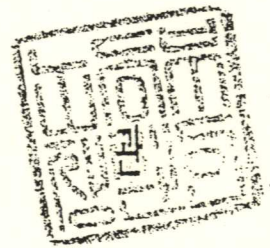
수신 손광은

참조

제목 결정서 등본 송부

귀하가 제기한 심사청구에 관하여 당부 심사관이 심사결정한 결정서(기각) 등본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심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보내드립니다.

첨부 : 결정서 등본 1통. 끝



「청구 이유」

1. 요양 신청

신청인은 청구의 에이아트 공업사에 92. 3. 28.경부터 일해오던중 92. 10. 2. 02:00경에 위 공장 성형사출부 작업실에서 성형사출기에 왼손이 팔려들어가 전치 70일 이상의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92. 10. 26. 노동부 서울등부지방사무소에 산업재해 보상법에 따라 요양신청을 했으나 청구취지 기재처럼 92. 10. 31.자로 불법취업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신청서가 반려되었습니다.

2. 취소 청구

신청인 불법체류한 외국인이라는 점만 제외하고 엄연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임이 분명합니다. 근로기준법 어디에서도 신청인의 경우에 근로자로 볼수 없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인도주의적인 견지에서라도 당연히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이웃 일본의 경우 불법체류 유무를 따지지 않고 산재의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92. 9. 30. 현재 외국인이 신청인과 같은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산재혜택을 받은바 있습니다.

변호사 손 광 은 법률사무소

의정부시 가능1동362-16 법무빌딩2층 법원입구

전화 : 874 - 1652 ~ 3

평등의 원칙면에서도 위 반려처분은 부당합니다.

본  
앞서본 여러가지 이유에 비추어 신청인의 요양신청을 반려한 피청  
구인의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변호사 손 광 은 법률사무소

의정부시 가능1동 362-16 번동반려번호 (반려인)

[ 별지 제 2 호서식 ]

재 심 사 청 구 서						처리기간
						50 일
청 구 인 (대리인)	①성 명	손 광 은	②주민등록번호	611206-123881	③근로자와의 관 계	
	④주 소	의정부시 가능1동 362-16		⑤전 화	874-1652,3	
원 처 분 을	⑥성 명	AQUINO L.SIBANAN	⑦주민등록번호	여권 K064203	⑧전 화	
받 은 자	⑨주 소	MIDSAYAQ, COTABATO PHILPPINES				
근 로 자	⑩성 명	상 등	⑪주민등록번호	상 등		
	⑫사업장명	에이아트공업사	⑬사업장소재지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동 16-16		
⑭원처분청	서울동부 지방노동사무소		⑮원처분년월일	1992.12.30.		
⑯결정 한심사관명	홍 무 영	⑰결정서를 받은날	1993.1.4.	⑱결 정 이 있을안날	1993.1.4.	
⑲심사관의 고지 유무 및 내용						
⑳청구 취지 및 이유 (별첨)						
<p>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 관한 법률 제 3 조 제 1 항 및 동법시행령 제 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3 년 3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청구인(대리인) 변호사 손광은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text-align: center;">산업재해 보상보험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p>						
첨 부 서 류						수입인지
1.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없 음
2. 증거조사신청서 (증거조사를 신청할 때에 한함)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하여 드립니다						

취지,  
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한 1992. 10. 31.자 최초 요양신청서  
분을 취소하리.

변호사 손 광 운 법률사무소

의정부시 가능1동 362-16 법무빌딩 2층 (법원입구)

전화 : 874-1652-3

1993 재결 제 256 호 재 결 서

사 건 명 : 요양급여

재심사청구인 성명 : 손 광 운

주소 : 의정부시 가능1동 362-16

원 처 분 청 : 서울동부 지방노동(청,사무소)장

원처분을 받은자 성명 : 아케노 시바은

주소 :

대 리 인 성명 : 손 광 운

주소 : 의정부시 가능1동 362-16

피 재 근 로 자 성명 : 아케노 시바은

주소 :

소속 : 에이아트공업사

결정을 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관 성명 : 홍 무 영

주 문 : 여건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 재심사 청구인 "손광운"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재심사 청구취지는 서울

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 (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이 1992. 10. 31. 자 피재근로자 "아케

노 시바은" (이하 "피재자"라 한다)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산재법"이

이	유
공업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2. 10. 2. 02:00경 업무	
1) 좌멸창 굴절 제2,3,4,5수지 좌(분쇄 개방성), 2) 절단 제4수지	
및 간질환"에 대하여 산재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	
신청은 피제자가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불법 취업중 피제되었기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계약은 법률상 인정될 수 없는 불법 고용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성립한 근로계약이 법률상 인정되는 적법한 것	
에 불법고용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법적	
있는 산재보험법을 불법 취업한 외국인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인 청구인은 그 처분에 불복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	
을 청구하였으나 심사관은 원처분청 의견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	

원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재심사를 청구 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이건의 쟁점은 피제자가 불법 취업중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법을 적용함
이 타당하느냐의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당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이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 하였다.
1. 재심사 청구서 (1993. 3. 4. 손광은)
2. 답변서 (1993. 3. 8. 원처분청)
3. 산재심사관 결정서 사본 (1992. 12. 30. 홍부영)
4. 최초 요양 신청서 반력 공문 사본 (1992. 10. 30. 원처분청)
5. 최초 요양 신청서 사본 (1992. 10. 서복은)
6. 초진 소견서 사본 (1992. 10. 동서울병원)
7. 기탁 참고자료
이상의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이건을 심리하건대 피제자는 에이아트공업사에서 근무하
여 오다가 1992. 10. 2. 02:00경 업무상 피제되어 상병명 "1) 좌멸창 굴절 제2,3,4,
5수지 좌(분쇄 개방성), 2) 절단 제4수지 기존증 좌, 3) 전신관찰 및 간질환"에 대한 요
양 신청을 하자 원처분청은 피제자가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불법 취업중 피제되었기



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불법고용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법적  
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을 불법 취업한 외국인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 하였던바 이에 청구인은 피제자가 불법 체류한 외국인이라는 점만 제외하고 엄  
연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며, 근로기준법상 외국인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규정

이 없으며, 인도주의적인 견지에서도 당연히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아야 하므로 원처분은 부당  
하다고 주장하므로 이견을 면밀히 살펴건대 피제자는 고용체류 자격 없이 국내사업장에서 불

법 취업증인 외국인으로서 출입국 관리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상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

되어 있어 적법한 고용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계약은 법률상 인정될 수 없는  
불법 고용계약이고. 한편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성립한 근로계약이 법률상 인정되

는 적법한 것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불법 고용계약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를 법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도 불법 취업 외국인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처분청이 피제자에 대하여 행한 원처분은 타당할뿐 달리 이를 취소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1993년 1993년 4월 26일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위원장	정현순
위원	조규상
위원	황진호
위원	문영한
위원	방극윤
위원	김종석

※ 이 재결서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구리노동상담소 자료 호

전화 (0346) 67-3010

우 137-044 서울시 서초구 반포4동 51-7 대정빌딩 2층

전화 (02)595-9798

문서번호 산심 32580 - 861

시행일자 1993. 5. 03

수 신 손광운(아키노시바은)

제 목 재결서 송부

귀하가 우리 위원회에 제기한 재심사 청구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재결되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그 재결서 등본을 송부합니다.

첨 부 재결서 등본1부. 끝.

이 는 등본임.

199 년 1993. 5. 03 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사무국장 정진철

소 송 위 임 장

수입  
인지

관하여 다음 표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소송행위와 아래 권한을 위임한다.

孫 光 雲  
의정부시 가능1동 362-16 법무빌딩2층(법원입구)  
電 話 : 43-1652~3

변호사확인인

소  
및 재판외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참가에 의한 탈퇴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신청, 담보 취소신청, 동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 취소결정  
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19893 . 5 . 13 .

Quino Sibaen  
Midsayap Cotabato, Philippines

소속변호사회경유인

본 필리핀인 아키노시바온은 서울시 성동구  
상왕십리소재 에이아트 공장에서 1992년 10월  
성형사출 작업도중 사고로 인하여 왼쪽 손가락  
을 절단 당하는 사고를 당했으나 한국 노동부가  
산재치료 불인정을 하여 노동부 서울 지방 동부  
지방 사무소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산재인정)  
을 통하여 민형사에 대한 모든 사항을 위임합니  
다. 위임서명에 박무영씨가 입회합니다.

주 소

박 무 영 :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382  
아키노시바온: Midsayap Cotabato, Philippines

1993년 5월 아키노 시바온 Aquino Sibaen  
입회인: 박무영

박 무 영

I the undersigned, Aguino Sibaen, employed at the A-ART Factory in the Sang Wang Ship Ri section of Seoul City was injurd in October 1992 while doing cast and dye work. My left finger was cut off. This accident has not yet been recognized as an industrial accident.

The Director of the Eastern Labor Office at Seoul is undertaking this recognition and this being done through Mr. Shon Kwang-Woon an attorney.

I therefore designate Mr. Park Mu Yung as my legal representative in this civil suit.

- Address

Aquino Sibaen: Midsayap Cotabato, Philippines  
Park Mu Young: 382 Sutaek-dong Guri KyungkiDo

Aguino Sibaen

14 May 1993

Aquino Sibaen

박무영 (Handwritten signature and stamp)

소 장

원 고 아 키 노 시 바 은

위 원 고 의 소 송 대 리 인

변 호 사 손 광 은

피 고 ~~노동부 서울 동북 지방사무소~~  
산업재해 보상심의위원회

요양급여재심사청구 기각결정취소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1993. 4.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변호사 손 광 은 법률사무소

의정부시 가농1동 362-16 법무빌딩2층(법원입구)

전화 : 874-1652~3

FAX : 874-1653

청 구 이 유

반려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동 소재 에이아트 공업사에 92. 3. 28.경부터 일해오던  
10. 2. 02:00경에 위 공장 성형사출부 작업실에서 성형사출기에 왼손이 달려  
전치 70일 이상의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92. 10. 26. 노동부 서울동부지방사무소에 산업재해 보상법에 따라 요양신청  
나 92. 10. 31.자로 불법취업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신청서가 반려되었습니

구등

2. 11. 10. 산업재해 보상보험심사관에게 위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  
했고 같은해 12. 30. 기각되었습니다.

3. 3. 4. 피고에게 재심사 청구를 청구했는데 청구취지 기재처럼 같은해 4.  
기각결정이 이뤄졌습니다.

법

불법체류중인 외국인이라는 점만 제외하고 엄연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이 분명합니다.

경우에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에 관한 차별적 대우를 사용

자가 근로자에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5조)

일찌기 노동부도 91. 10. 18경 전국44개 지방사무소에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위 조항을 근거로 산재보상을 지시하여 92. 8. 12. 현재 37명의 불법체류 외국  
인 노동자들이 산재보상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나. 출입국 관리법

피고는 출입국 관리법 제 15조 제 2항의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에 따라  
고용될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에  
터잡아 산재 보호를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위 출입국관리법은 말그대로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 및 체류자에 중점을 둔  
법이지 체류하는 외국인등의 여러가지 권리등을 규율하는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체류의 적법성 여부는 출입국관리법이 따질수 있지만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는 개개법률의 해석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일찌기 앞서 본것처럼 노동부가 근로기준법 5조를 근거로 원고와 같은 외국인에게  
산재보상을 했던 것도 위 출입국관리법 규정이 이 사건 산재보상 근거 마련에 장애가  
되지 않음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 인도적인 견지

원고는 이른바 3D 현장에서 일하다 다쳤습니다.

내국인이 기피하는 산업현장을 외국인이 대신하고 있는게 어쩔수 없는 시대의 흐름  
입니다.

피부는 달라도 넓게보면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을 위해 일정부분 영역을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국민어닌 보편적인 평등성을 지닌 인간이라는 점에서 당연히 산재보상이 이뤄져야 합니다.

미국이나 독일, 일본등이 일정한 정도 내국인과 차이없이 대우받는 것도 바로 위와 같은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을 정한 헌법 정신은(헌법 제 10조) 외국인에게도 그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3. 결 론

앞서본 여러가지 이유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한 재심사 청구기각결정은 근로기준법 제 5조등의 규정이 위배된 위법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입 증 방 법

- 1. 재 결 서 (갑 제 1 호 증)
- 1. 재 심 사 청 구 서 (갑 제 2 호 증)
- 1. 심 사 청 구 서 (갑 제 3 호 증)
- 1. 최초요양신청서 반려 (갑 제 4 호 증)
- 1. 소 건 서 (갑 제 5 호 증)
- 1. 여 권 사 본 (갑 제 6 호 증)

첨 부 서 류

- 1. 위 입 증 방 법 각 1부

변호사 손 광 은 법률사무소

의정부시 가동1동 362-16 법무빌딩2층(법원입구)  
전화 : 874-1652~3  
FAX : 874-1653

- 1. 소 장 부 본 1부
- 1. 소 송 위 임 장 1부

1993. 6. 25.

위 원 고 의 소 송 대 리 인

변 호 사 손 광 은

서울고등법원

귀 중

변호사 손 광 은 법률사무소

의정부시 가동1동 362-16 법무빌딩2층(법원입구)  
전화 : 874-1652~3  
FAX : 874-1653